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황주홍, 김명연 의원 각 대표발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안(의안번호: 10291), 김명연의원안(의안번호: 10310)]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7. 12. 7.(목)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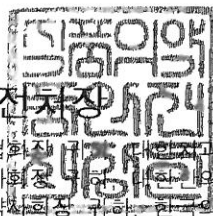
<개정안 주요내용>

- (황주홍 의원안)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김명연 의원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의원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대한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약사협회장 귀하, 대한화장품협회장 귀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귀하, 한국병원약사회장 귀하, 한국약품도매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귀하, 한국한약도매협회장 귀하, 한국한약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귀하,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이사장 귀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귀하,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장 귀하

주무관 이동원 의약품정책과 전결 2017. 11. 24.
장 김상봉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9497 (2017. 11. 2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21 팩스번호 043-719-2606 / ldw0925@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